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가치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
3. 정정사유:

- 클래스명 변경(A1 => A, C1=> C, C2 => C-F)
- 클래스 추가(Ae, Ce, C-P, C-P2, S-P)
- 클래스 삭제(B)
-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(A : 1% => 0.7%, S : 0.35% => 0.30%)
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(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명 변경 클래스 추가 클래스 삭제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Class A1: 선취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2. Class C1: 판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3. Class C2: 거치식 혹은 총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 혹은 적립식 납입금액이 10억 이상인 투자자, 국가채정법에 따른 기금,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투자자, 보험업법 제 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4. Class C-W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(Wrap)를 통하여 투자하는 자,</p>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Class A</u>: 선취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2. <u>Class C</u>: 판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3. <u>Class C-F</u>: 거치식 혹은 총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 혹은 적립식 납입금액이 10억 이상인 투자자, 국가채정법에 따른 기금,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투자자, 보험업법 제 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4. Class C-W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(Wrap)를 통하여 투자하는 자,</p>

		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, 100억 이상 매입하는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5. Class C-T: 자본시장법 제109조에 의거한 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되는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6. Class B: 후취판매 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(삭제)</p> <p>7. Class S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p>	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, 100억 이상 매입하는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5. Class C-T: 자본시장법 제109조에 의거한 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되는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p> <p>6. Class S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p> <p><u>7. Class Ae: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판매회사 전자매체(온라인)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8. Class Ce: 판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 전자매체(온라인)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9. Class C-P: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0. Class C-P2: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,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1. Class S-P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	<p>클래스명 변경 클래스 추가 클래스 삭제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</p>

		<p>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lass A1 수익증권 2. Class C1 수익증권 3. Class C2 수익증권 4. Class C-W 수익증권 5. Class C-T 수익증권 6. Class B 수익증권(삭제) 7. Class S 수익증권 	<p>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lass A 수익증권 2. Class C 수익증권 3. Class C-F 수익증권 4. Class C-W 수익증권 5. Class C-T 수익증권 6. Class S 수익증권 7. Class Ae 수익증권 8. Class Ce 수익증권 9. Class C-P 수익증권 10. Class C-P2 수익증권 11. Class S-P 수익증권
<p>제 39 조(보수)</p>	<p>클래스명 변경 클래스 추가 클래스 삭제 클래스 수 판매보수인하</p>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u>다만 Class C1의 판매회사보수율은 다음 2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점별로 차등적용한다.(삭제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lass A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 2. Class C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5.625 (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)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연 1000 분의 13.750 (2011년 5월 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lass A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 2. Class C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0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 3. Class C-F

		<p>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) 연 1000분의 11.875 (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) 연 1000분의 10.000 (2013년 5월 3일 이후)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3. Class C2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4. Class C-W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5. Class C-T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6. Class B (삭제)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8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	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4. Class C-W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5. Class C-T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6. Class S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7. Class Ae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4</p> <p>8. Class Ce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0</p>
--	--	---	---

		<p>7. Class S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5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	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0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9. Class C-P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8.0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10. Class C-P2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0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11. Class S-P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5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4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
<p>제 40 조(판매수수료)</p>	<p>클래스 추가 클래스 삭제</p>	<p>① 판매회사는 Class A1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1 선취판매수수료율 : 납입금액의 1% 이내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① 판매회사는 <u>Class A</u>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<u>Class A</u> 선취판매수수료율 : 납입금액의 1% 이내</p>

		<p>④ 판매회사는 <u>B 클래스(삭제)</u>와 S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수익증권 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lass B 후취판매수수료율: 2년 미만 환매 시, 환매금액의 1% 이내(삭제) 2. Class S 후취판매수수료율: 3년 미만 환매 시, 환매 금액의 0.15% 이내 <p>⑥ (생략)</p>	<p><u>2. Calss Ae 선취판매수수료율 : 납입금액의 0.5% 이내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판매회사는 S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수익증권 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Class S 후취판매수수료율: 3년 미만 환매 시, 환매 금액의 0.15% 이내 2. <u>Class S-P 후취판매수수료율 : 없음</u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	--	--